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령(안)

1. 개정이유

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,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화 시설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등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 시설 규정
(안 제26조의5)

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을 규정

나.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(안 별표2)

- 1)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
- 2)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

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의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18의 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편의시설 중 관광안내소 및 별표19의 공공편의시설지구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소, 안내시설을 말한다.

별표 2 제2호에 차목부터 하목을 타목부터 너목으로 하고, 차목 및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점검 결 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제1 항제3호 의5	20	40	60
카. 법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	법 제62조제2 항	15	25	35

	않은 경우							
--	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 제2호 차목 및 카
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5(응급장비의 구비의무 가 있는 공동주택 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6조의5(응급장비의 구비의무 가 있는 공동주택 등) ① (현행 과 같음) <u>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의3호</u> <u>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</u> <u>설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규</u> <u>칙」 별표18의 제1호가목에 따</u> <u>른 공공편익시설 중 관광안내소</u> <u>및 별표19의 공공편익시설지구</u> <u>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소, 안내</u> <u>시설을 말한다.</u>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)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마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응급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	법 제62조	300	300	300

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·인력·장비 등을 유지·운영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1호				
나. 법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1항제1호의2	50	75	100	
다.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1항제2호	100	200	300	
라.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	법 제62조 제1항제3호	100	200	300	
마.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경우	법 제62조 제1항제4호의2	100	200	300	
바.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1항제4호의3	50	75	100	
사. 법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	법 제62조 제1항제4호의4	50	100	150	
아.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	법 제62조 제1항제3호	50	75	100	

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	의2			
자.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4	20	40	60
차. 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	법 제62조제1	<u>20</u>	<u>40</u>	<u>60</u>
<u>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</u>	<u>항제3호</u>			
<u>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</u>	<u>의5</u>			
카. 법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	법 제62조제2	<u>15</u>	<u>25</u>	<u>35</u>
<u>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</u>	<u>항</u>			
타. 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3	50	100	150
파. 법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1항제4호	50	75	100
하. 법 제51조제3항,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1항제5호	50	75	100

<u>거.</u>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·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,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	법 제62조 제1항제6호	50	100	150
<u>너.</u>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,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1항제7호	150	200	300